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과오지급액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과오지급액 환수에 대하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7월 1일  
파 주 시 장

### 1. 공고대상

성명	주소	반송사유	처분내용
홍○우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솔이홀로***번길 **-**, *동 ***호	보관기일경과	과오지급액 환수 (1,000,000원)

### 2. 공고기간: 2026. 7. 1.~16.(15일간)

### 3. 공고내용

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2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신청액 1,000,000원이 '22년 10월 31일과 '23년 4월 7일에 이중으로 과다 지급된 사실이 있음.

나. 지급받은 2,000,000원 중 1,000,000원은 과오지급액임.

다. 당사자는 위 처분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과오지급액에 대하여 환수 처분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4. 의견제출

가. 제출처

- 기관명: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1층 청년지원팀
- 전화번호: 031-940-8663, 팩스번호: 031-940-8659, 전자우편: kimmy430@korea.kr
- 제출기한: 2026. 7. 16.(목) 18:00까지

### 5.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